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나585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나585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가단8205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환

변론 종결 2021. 1. 20

판결 선고 2021. 3. 10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가단8205 판결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1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매수자금 증여를 7, 131, 453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 131, 453원 및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 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 131, 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채무 초과 상태인 C은 2015. 4. 13. 배우자 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매수대금 을 증여하였으므로, 위증여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을 구한다.

##### 2) 피고

피고는 C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

####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0. 7.13. 주식회사 파이하 ' F ' 이라 한다) 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C 은 위 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F은 2012. 12. 24. 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위 채권은 주식회사 D,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원고는 F과 C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가소 59394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10. 위 법원으로부터 'F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51,576원과 그 중 7,131,453원에 대하여 2017. 10.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

갑제 3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매수대금을 증여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 환 판사 나상훈

별지